



제 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166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재심사 기간 등을 「행정기본법」에 따라 정비 ...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태선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3. 20.

3. 회 부 일 : 2025. 3.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행정소송과 같은 불복 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간 및 연장기간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간·연장기간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

기간·연장기간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9조).

Ⅲ. 검토의견

1.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재심사 기간 등을 「행정기본법」에 따라 정비

개정안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또는 인증갱신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하도록 하고, 인증기관은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하며, 그 밖의 사항은 「행정기본법」 중 이의신청 관련 규정(행정청의 처리기한 연장 규정은 제외)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6항 및 제7항, 제59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5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① ~ ⑤ (생 략) ⑥ 제3항에 따른 인증 또는 제5항에 따른 인증갱신에 대한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u>인증기관에</u>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제5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u>심사 결과</u> <u>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u> <u>에 인증기관에</u> ----- -----. ⑦ 제6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

<u>여부 및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신 설></u> <u>⑧ (생 략)</u>	<u>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 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⑧ 인증기관은 제7항에 따른 재 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 는 지체 없이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u> <u>⑨ 제7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 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u> <u>⑩ (현행 제8항과 같음)</u>
--	--

현행법은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돼지·닭·오리·염소 등 농장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

- 1) 제5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하 “농장동물”이라 한다)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6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하여 주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하 “인증농장”이라 한다)의 경영자는 그 인증을 유지하려면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⑥ 제3항에 따른 인증 또는 제5항에 따른 인증갱신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신청하고, 인증기관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증심사를 완료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는 인증갱신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인증 또는 인증갱신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인증기관에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시행규칙 제36조의4제1항),

인증기관은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시행규칙 제36조의4제2항 및 제3항).²⁾

심사 여부 및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인증농장의 인증 절차 및 인증의 갱신, 재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시행규칙 제36조의4(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또는 인증갱신에 대한 재심사)** ① 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갱신의 심사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7서식의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9조제7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시행규칙 제36조의2(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① ~ ⑤ (생략)

⑥ 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증심사를 끝내야 하며, 인증심사가 끝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⑦ 인증기관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을 신청한 농장이 별표 9의2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를 발급한 후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농장의 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심사·재심사 절차도]

구분	인증 신청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 포함)		심사		재심사 신청		재심사 여부 결정 통보		재심사 결과 통보
신청인 및 처리기관	신청인	⇒	인증기관	⇒	신청인	⇒	인증기관	⇒	인증기관
청구기간 및 처리기간	인증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은 <u>인증 만료 전 2개월 전까지 신청</u>		2개월 이내 결과 통보		심사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u>7일 이내</u>		재심사 신청 7일 이내		2개월 이내 결과 통보

그런데, 재심사 신청기한이 심사결과 통지 후 7일로 짧게 규정되어 있어 「행정기본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의 일반적 기준 (신청기한 30일, 처리기간 14일, 연장 10일 이내)³⁾과 비교할 때, 권리구제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재심사 신청기한을 심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현행 7일)하고, 인증기관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재심사를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재심사 신청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입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개정안·행정기본법 비교]

구 분	현행 (근거규정)	개정안 (근거규정)	행정기본법 (근거규정)
재심사 신청기한	심사결과 통지일부터 7일 이내 (시행규칙 제36조의4제1항)	심사결과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개정안 제59조제6항)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법 제36조제1항)
재심사 여부 결정 통보 기한	신청일부터 7일 이내 (시행규칙 제36조의4제2항)	신청일부터 7일 이내 (개정안 제59조제7항)	-
재심사 처리기한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 (시행규칙 제36조의4제5항 준용)	지체없이 (개정안 제59조제8항)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10일 연장 (법 제36조제2항)

다만, 개정안은 인증기관이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재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체없이’라는 표현은 불확정 개념으로서 인증기관이 재심사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나 미비사항 보완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처리 지연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행정기본법」 제36조에서 이의신청 결과를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통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고려하여, 본 개정안도 결과 통보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행정기본법」 상 기준을 직접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재심사와 관련하여 안 제59조제7항·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행정기본법」 상 이의신청 규정을 따르도록 한 규정(안 제59조제9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4)에서 이미

4)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 ④ (생략)

⑤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심사 또는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이 법 시행 전 심사 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이 법 시행 이후 재심사 또는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참고로, 이와 동일한 취지의 개정안 5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정비 관련 개정안]

개 정 안	내 용	현행 (하위법령)	개정
농산물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재심사 의뢰 기간	7일	30일
	재심사 결과 통보 기간	재심사 완료 후 7일	14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재심사 의뢰 기간	7일	30일
	재심사 여부 통보 기간	7일	7일
	재심사 결과 통보 기간	2개월	지체 없이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료의 재검사 의뢰 기간	10일	30일
	재검사 여부 결정 통보 기간	-	14일
	재검사 결과 통보 기간	20일	행정기본법 적용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갱신·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의뢰 기간	7일	30일
	재심사 여부 결정 통보 기간	7일	7일
	재심사 결과 통보 기간	10일	행정기본법 (단서 제외)
	시료의 재검사 의뢰 기간	7일	30일
	재검사 여부 결정 통보 기간	7일	7일
	재검사 결과 통보 기간	7일	행정기본법 (단서 제외)
친환경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식품등의 인증·갱신·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의뢰 기간	7일	30일
	재심사 여부 결정 통보 기간	7일	7일
	재심사 결과 통보 기간	10일	행정기본법 (단서 제외)
	유기농업자재 공시 재심사 의뢰 기간	7일	30일
	재심사 여부 통보 기간	10일	-
	재심사 결과 통보 기간	3개월	행정기본법 적용

※ 자료: 관련 법률 및 개정안 내용 재구성

문 의 처

02)6788-5425
